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
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박상우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장애인을 위한 보도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에 물건을 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로 그 이용에 불편을 야기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재 대상 행위 및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제재 대상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의 세부 양태 규정
(안 제14조의7)

나. 장애인을 위한 보도 이용 방해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 마련(안 별표 3 제2호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4조의7(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) 법 제16조의3제3항에 따른 주차 방해 행위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 한다.

1.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
2.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,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
3.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
4.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의 접근가능을 나타내는 그림표지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
5.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

별표 3 제2호가목 및 나목부터 마목을 각각 사목 및 가목부터 라목으로 하며, 사목(종전의 가목) 위반행위란 사목 중 “법 제16조제4항”을 “법 제16조의3제2항”으로 하고, 같은 란 사목(종전의 가목) 근거 법조문란 중 “법 제33조제2항”을 “법 제33조제3항”으로 하며, 같은 호에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(만원)	
		1차 위반	2차 위반 이상
마. 법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을 위한 보도의 이용을 방 해하거나 이를 훼손한 경우	법 제33조제2항제1호	50	
바. 법 제16조의3제3항을 위반하 여 주차 방해 행위를 한 경우	법 제33조제2항제2호	50	

부 칙

이 영은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14조의7(장애인전용주차구역</u> <u>주차 방해 행위) 법 제16조의3</u> <u>제3항에 따른 주차 방해 행위는</u> <u>다음 각 호의 행위로 한다.</u> <u>1.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</u> <u>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</u> <u>는 행위</u> <u>2.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</u> <u>뒤,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</u> <u>나 주차하는 행위</u> <u>3.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</u> <u>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</u> <u>는 행위</u> <u>4.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</u> <u>애인의 접근가능을 나타내는</u> <u>그림표지 등을 지우거나 훼손</u> <u>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</u> <u>5.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</u> <u>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</u>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	
연 락 처	(044) 201 - 4772